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(올림픽대로~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)

- 점검일시 : 2018.06.27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 박상종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시점부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유류저장소는 소화기가 미설치되어 있으니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기 바람
- 유류조장소는 접근로가 없으니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 등 가설통로를 설치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시점부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발전기는 아래사항을 준수하기 바람.
- ① 소화기 비치
- ② 분전반 잠금장치 관리
- ③ 분전반 충전부 보호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9(이동식발전기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시점부 작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거푸집은 우수에 지반이 침식되어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이동 조치하기 바람
- 장비, 자재 등은 전도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면 단부에 주차 및 적치를 지양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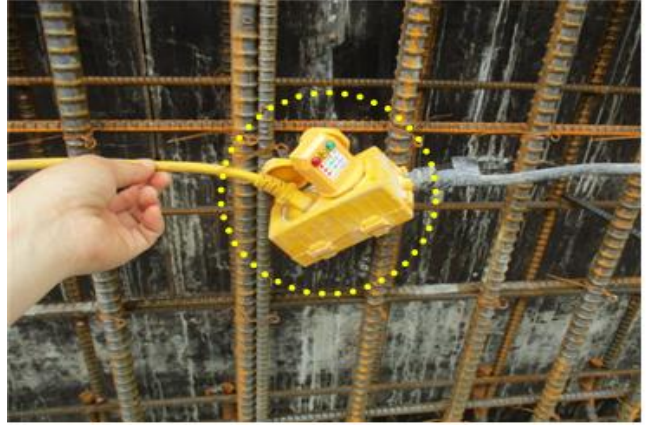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종점부 L형 옹벽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전선 및 콘센트는 접지가 되어있지 않으니 근로자 감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접지 후 사용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기구의 접지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7(가설전선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종점부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굴삭기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람.

① 버킷에 이탈방지 안전핀 설치

②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 분리

③ 굴삭기를 이용한 양중 작업시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기 바람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종점부 L형 옹벽에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한 부착콘크리트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접착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으로 콘크리트 타설 전 제거하여 콘크리트와 철근의 접착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

